



洪 天 龍

慶南大學校 教授

## 1. 自我를 상실한 現代의 價值觀

오늘날 科學技術의 발달은 우리 사회를 놀랍도록 변화시켰고 풍요롭게 하였다. 현대적인 상황은 이러한 과학기술의 혁신에서 연유한 사회변동의 소산이라고 할 것이다.

물질적 풍요가 곧 인간 낙원을 이루어준다고 착각하여 물질의 대량생산과 개발을 통한 과학기술의 발전에만 전념하여 왔다. 기계문명은 최대생산, 최대소비를 내세우고 있다.

물질의 풍요가 곧 인간사회의 낙원을 이루어 준다고 착각하여 물질의 대량생산과 기술개발에 전념하여 왔다. 이러한 풍토는 실리주의를 넣게 하였다.

인간사회의 전통적 가치질서를 거부하고 실용적 가치위계를 바꾸어 놓음으로써 모든 것을 과학화, 효율화, 합리화하여 능률적인 사회를 이루어 놓기는 하였으나, 도덕적 양심과 인간적

정서 및 종교적 신앙이 메마른 비정의 인간사회를 만들어 놓았다.

여기에 사람에게 최고로 인정받을 수 있는 덕목은 人情이 아니다. 즉 仁·義·禮·智·信과 같은 유교의 德目, 智·仁·勇과 같은 서구사회의 行動倫理, 또 信·望·愛와 같은 기독교의 價值觀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人倫과 道德(원래 덕은 큰 것, 西洋에서는 라틴어의 Vir: 사람됨)의 精神을 사람이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가 문제가 아니다. 오직 사람의 價值는 그 사람이 가진 능률과 정비례한다. 능률을 내는 데 최고 가치를 두려고 하면 인정·사정을 보면 안되기 때문에 인정없는 기계적 인간이 출세하는, 즉 感情이 메마른 사막과 같은 사회가 돼 버리는 것이다.

物資가 풍부해지면 인심도 좋고 살기 좋은 세상이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사람은 불신에 가득 차 갈등, 반목, 폭력, 약탈, 중상, 모략, 전쟁 등으로 이율배반의 현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기계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현대 技術社會는 고도의 성장을 이루하였으나 정치·경제·사회·교육 각 부분에서 부조리가 발생하여 갈등, 대립,

編輯者 註：本稿는 本協會 慶南支部에서 실시한 第8回 技術講習會에서 慶南大學校 洪天龍교수가 行한 講義內容이다. 講習會 내용은 107p 지부소식란을 참고바란다.

불안, 초조, 절망에 가득차게 만들었다.

지나친 物質主義는 실리추구에만 몰두하는 배급사상을 갖게 하였다. 이러한 사조는 각 개인의 행동에까지 영향을 미쳐 개인의 범행, 비행, 퇴폐풍조를 유발시키고 있으며, 오직 이권운동, 수회, 투기, 도박을 성행하게 하였다. 教育面에서는 지나친 경쟁주의적 교육, 입시편중교육, 학벌 편중문제를 유발시켜 相互不信風潮, 적개심을 일으켜 불건전한 사회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인간의 幸福의 척도를 공리주의자와 같이 물량적 척도로 계산하면 안된다. 인간의 보다 큰 기쁨은 물질적인 것보다는 오히려 정신적인 데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인간의 욕구는 물질적, 정신적 양면을 갖고 있다. 人間은 이 욕구가 만족될 때 행복감을 갖게 된다. 물질적 만족만으로서는 인간행복의 반이 충족되는 것이며 인간의 정신적 欲求, 즉 종교적, 윤리적, 감정적이고 지적욕구의 만족이 가져다 줄 행복도 같이 맛보도록 하여야 한다.

物質과 정신의 기초 위에서 우리는 그것을 인격적으로 통정시켜 견실한 인간적인 여건과 환경으로 값있게 조성시켜야 한다.

그것이 바로 인격적 인간관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教育이 보급되고 발달되면 될수록 사람은 완전해지고 더 善하고 값있고 보람있는 인간이 되어야 할 것인데, 오히려 지식이 늘면 늘 수록 사람은 사악해지고 범죄도 정비례해서 증가되어 가고 있는 현실은 지식이 교활하게 악한 행위의 도구로 점차 오용되어 가는 경향이 짙어 가는 것이다.

오늘의 우리 社會는 자녀가 부모의 말을 믿지 못하고 제자가 스승의 말을 믿지 못하고 國民이 통치자의 말을 믿지 못하고 세계는 곳곳에서 전쟁을 벌이고, 힘과 권력의 횡포와 마약, 테러가 자행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의 사회속에서는 人格이 완성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는 남을 속이는 것을 능사로 삼게 되는 것이다.

왜 이러한 불신사회가 조성되었는가에 관해서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 가운데 중요한 원인은 人間이 지니고 있는 평등한 존엄을 부정하고, 사회질서인 정의를 부정하고 共同善(이는 사회질서이며 사회적 협동을 통한 인간발달의 질서)을 부정하였기 때문이다.

自己가 원하는 이익과 욕망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괴변을 일삼고, Goethe가 지옥에도 돈이 있으면 살 수 있다는 말과 같이 힘과 재화를 현세적인 우상으로 섭기고 있기 때문에 인간관계에서 사랑과 신뢰가 사라진 것이다.

그런데 社會가 올바른 질서를 결여한 때에는 그 사회의 혼란과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개인이 희생을 당하는 역효과를 나타내는 것이다. 인간이 힘을 합치면 무한히 발전할 수 있는 것이지만 서로 싸우면 함께 멸망의 길로 내닫게 되기 마련인 것이다.

人間과 인간이 힘을 합치기 위해서는 적어도 그 사회에 신뢰관계가 있어야 할 것이다. 信賴는 인간을 합치게 하고 不信은 인간을 갈라놓게 하는 것이다. 특히 사회지도층의 부정과 불신은 민족을 분열시키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음은 실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사회에 불신풍조가 충만하여지면 그 社會는 구제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 어떤 藥醫나 藥藥도 받아 들이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를 구제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겠는가?

## 2. 人間性回復을 위한 價値觀의 確立 (건전한 사회풍토 진작)

인간성회복이라는 말은 원리적으로 인간관계를 통하여 그리고 그 사회집단의 기대와 규범에 따라 인간성을 회복한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서

개인 혼자서는 결코 人間다워질 수가 없고 일정한 사회에서 상호작용에 의해서만 그것이 가능하다는 말이다.

科學技術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행복을 위하여 존재하여야 그것이 人間의 등을 타고 인간을 물고 가서는 안된다.

과학기술이 인간화되어야 하고, 기계도 인간화, 사회조직도 인간화되어야 한다. 모든 인간이외의 사물이 인간을 위하여 존재하여야 한다는 主·客의 위치를 제자리에 놓아야 한다.

사람의 生命까지도 위협하는 전쟁·공해·불안·진장 등을 산출하는 물량의 변화를 마치 발전으로 착각하는 오늘의 지적 풍토를 바꾸어서 모든 가치의 구심점을 인간의 존엄과 행복, 그리고 문화창조와 인류사회와 평화에 두는 데 인간성 회복의 주안점이 두어야 한다.

따라서 技術文明이 인간을 위해 봉사하며, 人間을 위한 참된 사회복지사회를 건설하는 데 새 지표를 세워야 할 것이다.

사람으로서의 정서생활에서 오는 기쁨과 슬픔 까지도 상실한, 또 기계가 사람의 생각도 지배하는 社會에서 인간의 권리가 복권되어야 하는 일은 인간사회의 당위적 요청이다.

실리추구를 일삼아 물질충족을 위해서 허덕이고 있느라 자신의 존엄을 좀먹는 人間不在의 현상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인간복권의 과업이 무엇보다도 시급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우리 人類는 물량위주의 精神社會에 인간정신을 심어 정신과 물질이 균형을 찾도록 하여 물량이 지배하는 타율의 세계가 아닌 정신이 지배하는 자율의 세계, 사랑과 협동의 사회, 인간정신이 살아 있고 인간을 위한 세계를 실현할 가치관을 확립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人類의 幸福과 가치를 중심으로 한 청사진의 내용을 인류가 보다 착하고 살기좋고 아름답고 보람있는 자아실현과 자기완성에 두되,

인류사회에서 가장 존귀한 것이 인간임을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정신생활과 물질생활의 창조적 調和로서 인간중심주의에 의한 인간의 이상사회, 즉 정신적으로 아름답고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인간적으로 보람있게 살 수 있는 人類의 위대한 협동사회를 건설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현대 物質社會 내부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 이기적 타산심과 인간불신풍조, 부조리 그리고 부도덕하고 불건전한 모든 퇴폐풍조를 일소하는 일에 힘써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민주, 평화, 복지, 안전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새 시대의 가치원리를 실현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에 평범한 진리로서 사회에 있어서 人間關係는 가정에서의 사랑에 의한 가족관계의 확대로 보면 될 것이다. 사랑이란 바로 정의의 근원이요 분리된 것의 재결합을 지향하는 힘이기도 한 것이다.

家庭의 倫理→社會倫理→國家倫理→世界倫理=여기에서 和解, 寬容, 義理, 協助, 奉仕, 同情 등의 德目이 솟아날 것이다. 상대방을 이해하고 존경할 때 우리는 적대의식을 버리고 신뢰감을 갖게 된다.

호감과 신뢰심에서 나오는 우호정신이야말로 평화와 모든 협력의 기반인 사랑과 협동으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倫理와 도덕이 퇴색하고 과학문명이 횡포를 하고 있는 이 때에 마땅히 지향하여야 할 이 시대의 가치기준이요, 윤리규범이라고 할 것이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며 善의 생활을 하며 정직하고 근면하며 성실하고 관용하는 사회풍토를 이루어 人性이 공존하는 사회를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덕목의 실천으로 위정자는 국민을 사랑하고 선정을 행하며 국민은 위정자를 존경하게 될 것이며, 학교에서는 선생은 학생을 잘 교육하며 학생은 선생을 존경하게 될 것이며, 사회

에서는 연장자는 연소자를 위하고 연소자는 연장자를 존경하게 될 것이며, 직장에 있어서는 상사는 직원을 잘 지도할 것이고 직원은 상사에 순종하게 될 것이다.

또한 家庭에 있어서의 형제자매의 사랑을 社會와 國家, 世界에 적용한다면 동료, 이웃, 민족, 국가, 인류에 대한 사랑으로 될 것이며, 여기에서 화해와 환용, 의리, 신의, 예의, 겸양, 협조, 봉사, 동정의 덕목이 솟아나는 것이다.

우리는 協同으로 나타나게 되는 자유·평등·박애정신을 잊어서는 안된다.

### 3. 電氣技術者로서의 責任

일찍이 회랑의 철학자 폴라톤이 말하기를 화공은 화공이어야 하고 수부가 되어서도 안되고, 농부는 농부이어야 하고 법관이 되어서도 안된다. 군인은 군인이어야 하고 상인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하였다. 요컨대 각자는 각자 자기의 할 일을 하라는 뜻이라고 할 것이다.

여기서 한 예로서 電氣工事를 함께 있어서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할 의무가 있다. 善良한 관리자의 주의라함은 이를 추상적 경과실이라고 하는데 普通의 합리인이 행하는 주의 정도이지만 電氣技術者로서 기대되는 정도를 가리킨다. 이 정도의 주의를 게을리 하면 責任을 지게 되는데, 이밖에도 사고로부터 생기는 危險에 따라서는 가령 생명·신체에 직접 피해를 줄 위험이 큰 의사, 운수업자, 식품제조업자에게는高度의 注意義務가 있는 것이다.

電氣事業法 제 1조에 의하면 電氣事業을 합리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전기사용자의 이익보호와 전기사업의 전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의 安全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전기공사업법 제 1조는 전기공사의 안전하고 적정한 시공을 하게 함으로써

위해를 방지하고 電氣工事業의 전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電氣用品安全管理法 제 1조에서는 電氣用品의 제조·판매 사용에 관한 규제를 함으로써 불량 전기용품으로 인한 위험 및 장해의 발생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되고 있는 바, 전기사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사명은 막대함을 알 수 있다.

다음은 電氣工事 등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어떠한 법률관계가 생기는가 하는 문제에 관하여 살펴 보기로 한다.

전기기술자 개인의 책임문제로서는,

(가) 民法 제750조에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損害를賠償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에서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게을리함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 책임을 지는 과실책임주의를 선언한 규정이다.

그러나 과학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광공업 기타 각종의 사업활동에서 위험이 따르는 기계나 설비를 하는 데서 예상하지 못하였던 종류의 사고나 손해가 발생하게 되었다. 즉 첫째 鐵道, 自動車, 航空機 등의 교통기관의 발달이고 둘째 鎳業, 電氣事業, 原子力事業 등 위험한 설비를 가진 기업의 발달이 그것이다.

여기에 위험발생의 가능성은 내포하고 있는 기업은 과실의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과정에서 타인에게 가한 損害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오늘날 경제구조상 당연한 것으로 되고 있다. 이 원리가 無過失책임이다.

(나) 동법 제758조에 의하면 공작물設置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他人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의 점유자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하였을 때에는 그 소유자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규정은 전기시설물 등의 설치 보존의 하자로 생긴 損害에 대하여 그 시

설물의 절유자나 소유자에게 무거운 責任을 지우고 있다. 그러므로 危險性이 많은 공작물을 관리하거나 소유하는 자는 위험을 방지할 주의 의무가 있는 것이며, 만일 위험이 현실화되었다면 責任을 지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되고 있다.

즉, 사람의 生命과 신체·재산에 대한 안전과 위해의 방지를 위하여 전기설비의 基準에 대하여는 電氣事業法과 동법 제36조에 의하여 전기 설비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데, 동령은 발전, 송전, 변전, 배전 또는 전기사용을 위하여 설치한 기계, 기구, 전선로, 보안통신선로, 기타의 工作物의 기술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예를 들면 시 가지 및 人家가 밀집한 지역의 지표상의 離隔距離는 7000볼트 초파에 관하여는 112조에 케이블을 요하고, 다만 17만 볼트 미만으로 35,000 볼트 초파는 8m 이상, 35,000볼트 초파는 8m+1만 볼트 및 端數에 각 12cm 加算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례도 이를 電氣工作物의 하자에 대한 기준으로 삼아 판단하고 있다. 즉, 설치당시에는 기준에 합치하였으나 이후 자연적, 인위적(건축 등)으로 기준미달이면 하자를 인정하게 된다(대법, 1971. 3. 23 선고, 70다 2956).

이는 工作物을 설치하는 자는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損害를 입지 아니하도록 설비를 하여야 되고 그 설비에 결함이 있어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그 工作物의 설치에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고 그리고 그 설비가 공작물의 설치 당시만의 상황에 그치지 않고 그 설치 후에 있어서도 주위의 자연적 또는 建物의 신축 등으로 인한 인위적 환경변화의 상황에 대하여도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치 않게 하는 設備가 있어야 하는 바, 만약 그에 결함이 있어 타인에게 손해를 입게 하였을 때에는 공작물의 설치에 하자가 있다고 하였다.

(다) 동법 제757조에서는 도급인은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賠償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도급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電氣工事에 있어서 공사에 있어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 도급인이라 하더라도 수급인의 행위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진다는 데 의의가 있다.

(라) 동법 제756조에는 他人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電氣工事を 위하여 하도급을 이용하는 경우 원수급인은 그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電氣工事 그 자체에 한하지 아니하고 당해 도급공사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업무나 그 부수적인 업무를 행하는 경우에도 업무의 집행에 해당함은 물론이다.

이는 원수급자(사용자)의 선임·사무감독관계에 대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였을 때, 책임을 지게 된다. 그러나 상당한 주의를 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注意를 상당한 것이라고 할 것인가

첫째, 종사할 업무에 관하여 보다 적극적인 적성, 성격, 경력 등이 있어야 한다고 하고, 둘째 취업규칙이나 내부규칙, 평소의 일반적인 훈시나 지도의 정도로서는 부족하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매일 업무개시전에 주의사항을 일독시키는 경우에도 감독상의 過失을 인정한 판례도 있다. 여하튼 피용자가 사고를 낸 이상, 사용자에게 감독자의 과실을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원리는 개인의 自由로운活動의 최소한의 제한이며 인류사회에 있어서 손해의 공평·타당한 사상의 일면이기도 한 것이다.